

# 이천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여성보육과

제정 2019· 8· 12 조례 제1522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린이집”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.
2. “영유아”란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3. “보육교직원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
4. “어린이집 통학차량”이란 제1호의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통학 등에 이용하기 위해 「도로교통법」 제5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(이하 “통학차량”이라 한다)를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안전 지도·점검 계획 수립 등)**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·점검계획(이하 “지도·점검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지도·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지도·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
2. 소방훈련 등 안전 분야의 지도·점검 사항
3.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 사항
4.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·점검 사항

이천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

5.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·점검 사항
6. 지도·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
7.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사항
8.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안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)** 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의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, 위생관리,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7조에 따른다.

**제6조(통학차량의 우선보호)**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통학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7조(보육교직원 안전교육)**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 교육)**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**제9조(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)** 시장은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·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**제10조(협력체계 구축)**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천경찰서, 이천소방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